

제6조(비밀유지)

본 약정과 관련된 협력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상대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협력업무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·누설 또는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①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기관의 정보 중 비밀유지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② 양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.

제7조(협의조정)

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

- ① 양 기관은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양 기관은 부도, 파산, 해산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양 기관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

제9조(기타사항)

- ① 양 기관의 제2조 각 호의 협력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- ② 본 협약서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년 12월 4일

최재덕

해외건설협회
회장 최재덕

박양호

국토연구원
원장 박양호